

 보건복지부		<h1>보 도 자 료</h1> <p>1월 28일(금) 조간 (1월 27일 12:00 이후 보도)</p>	
배 포 일	2022. 1. 28 / (총 8 매)	담당부서	보육정책과
과 장	유 보 영	전 화	044-202-3540
담 당 자	임 성 필		044-202-3551

2022년도 「보육사업안내」 지침 개정

- 기관보육료 신청 시 보육교직원 급여내역 제출 및 보육교사 급여 인상 권고-
 - 시간제 보육서비스 이용대상 외국인 아동까지 확대 -
 - 보조·연장전담교사 지원기준 완화 및 교직원 배치기준 특례 확대 -
- 보건복지부(장관 권덕철)는 1월 28일(금) 어린이집 운영·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을 담고 있는 '2022년 보육사업안내' 지침을 개정하였다고 밝혔다.
- 이번 개정은 보육료·양육수당·보육교직원 지원예산 등 예산 변경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,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원활한 보육사업 운영을 도모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.
 - 보육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합리적 지침 개정을 위해 보건복지부는 작년 말 17개 시·도, 유관기관과 이해관계자 간담회를 4차례 개최하여 각 단체의 개정 의견을 듣고 논의한 바 있다.
- 「2022년 보육사업안내」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고,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[정보]>[법령]>[훈령/예규/고시/지침/] 메뉴에서 볼 수 있다.

< 보육료 >

- 올해 3월부터 어린이집에서 기관보육료(21년 대비 8% 인상)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원장·담임교사 등 보육교직원의 급여내역을 제출해야 한다.

- 이번에 개정된 지침은 보육료 인상에 따라 민간·가정어린이집 영아반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임금을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1호봉* 급여 이상으로 지급할 것을 권고하였다.

*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1호봉 월 급여(2022년 기준) : 201.8만 원

< 양육수당 >

- 그동안 양육수당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됨에 따라,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도 신청이 지연되는 경우 지급받지 못했으나, 앞으로는 사유에 따라 신청 이전 기간이라도 양육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.
- 이번 개정으로 감염병으로 인한 입원이나 격리조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육수당을 신청(예: 보육료→양육수당 변경신청)하지 못한 아동에게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양육수당을 소급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.

< 시간제보육서비스 >

- 그동안 외국인 아동은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웠으나, 올해부터는 이용대상이 외국국적 아동까지 확대된다.
- 외국인 아동은 시간제 보육 관리기관에서 아동등록 후 시간당 4,000원을 지불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,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정비가 완료되는 4월부터 아동등록 및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다.

< 장애아보육 지원 확대 >

- 장애아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장애아 보육료가 6% 인상(1인당 월 50.2만 원→53.2만 원)된다.
- 또한, 장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특수교사와 치료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수당이 10만 원 인상(월 30만 원→40만 원)된다.

- 한편, 어린이집에서도 장애 영유아의 특성에 맞는 취학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취학 지원계획을 수립·실시하게 된다.
- 장애아 보육 어린이집이 보육계획 수립 시 취학 지원계획을 원활하게 수립할 수 있도록 취학 지원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보육현장을 독려해 나갈 계획이다.

< 보육교직원 지원기준 완화 및 처우 개선 >

- 보조교사 및 연장 보육 전담교사에 대한 지원기준을 완화한다.
 - 영아반 운영 어린이집의 보조교사 지원을 확대하여, 어린이집 전체 정원의 50%를 충족해야 보조교사를 지원했던 종전 기준을 영아반 정원의 50%만 채워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기준을 완화하였다.
 - 도서·벽지·농어촌 지역의 경우, 보육교사 인력수급의 어려움을 감안하여, 종전 어린이집 이용아동 수와 이용시간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지원받을 수 있었던 연장보육 전담교사를 일단 선정되고 나면 한 가지 기준만 충족해도 계속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.
- 또한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특례를 인정하되, 특례 적용으로 증가하는 수익금의 일정 비율 이상을 보육교사 처우개선에 쓰이도록 하였다.
 - 교사 대 아동 비율 특례를 인정받은 어린이집은, 보육교사 1인이 보육할 수 있는 영유아 수가 증가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의 최소 30%* 이상을 보육교사 급여 등에 사용해야 하며,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특례 적용에서 제외할 계획이다.

* 만 1세반 : 13만 1,700원/ 만 2세반 : 10만 9,200원/ 만 3~5세반 : 8만 4,000원

- 대체교사의 근로여건 및 보육 교직원의 급여 개선도 이루어진다.
 - 대체교사 관리자에게만 운영비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던 수당을 대체교사에게도 지급하고, 근무 장소가 도서·벽지·농어촌 지역 등 취약지역이거나 원거리 근무지일 경우 교통비에 상응하여 유류대 지급이 가능하도록 여비 규정을 마련하였다.
- 아울러, 코로나 19 장기화 상황에서도 영유아 돌봄에 힘쓰고 있는 보육교사 처우향상을 위해 교사근무환경개선비(담임수당)가 인상된다.
 - * 담임교사 월 24만 원→26만 원, 연장 보육 교사 월 12만 원→13만 원

< 그 밖의 개정사항 >

- 보조교사 및 연장보육교사 등 시간제 형태로 근무하는 교사의 보수교육 이수 시기를 교육 성격에 따라 합리적으로 달리 정한다.
 - 승급교육은 실제 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하되,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직무교육의 경우 전체 보육 교직원의 보편적 자질 향상을 위해, 실제 근무시간과 무관하게 근무 후 만 2년이 경과하면 근무시작일로부터 3년 이내에 이수해야 한다.
-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교사와 연장보육교사를 지원할 어린이집을 선정하는 데 우선순위로 참고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하였다.
 - 보조교사의 경우 장애아 전문·통합 어린이집이나 열린어린이집으로 지정된 어린이집 등에 대해 우선 지원하고,
 - 연장보육교사의 경우 보육교사에게 국공립 1호봉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는 민간·가정 어린이집 등에 대해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 순위를 두어 지원하게 된다.

< 보조교사 및 연장보육교사 지원 우선순위 >

보조교사	연장보육교사
·장애아 전문/통합 어린이집 우선 지원(장애 영아 현원 수 고려) ·열린어린이집으로 지정된 어린이집 우선 지원 ·민간·가정 어린이집 중 국공립 1호봉 이상 지급 어린이집, (0세반 운영 여부 및 0세반 수 고려) 다(多)가치 보육 시범사업 참여 어린이집, 평가제 평가결과, 표창내역, 행정처분 이력, 영아반 수 고려 등	·민간·가정어린이집 중 국공립 1호봉 이상 지급 어린이집, 연장반 아동의 마지막 하원 시간 및 연장 반 수 고려 등

- 보건복지부 배경택 보육정책관은 “이번 ‘2022년 보육사업 안내’ 지침 개정으로 어린이집이 영유아에게 더욱 활기찬 곳으로 거듭나고, 보육 교사의 근무 여건은 개선되며, 보호자의 양육 여건이 한층 나아지기를 바란다”라고 언급하면서,
- “특히 올해는 영아수당 등 영아기 집중투자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해로서, 해당 정책의 집중 홍보와 현장과의 유기적인 소통으로 아동 친화적 양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”라고 밝혔다.

< 붙임 > 2022년 보육사업안내 개정 주요내용

붙임

2022년 보육사업안내 개정 주요내용

< 시행규칙, 고시 개정 사항 반영 >

□ 양육수당의 지원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

- 영아수당 도입(22.1월)에 따라 영아수당 지원대상자는 양육수당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을 규정(21.12월 개정 반영)

* 영아수당 지원대상자 : 만 0~1세 (22년 1월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)

< 기타: 취약보육 지원 강화 등 >

□ 기관보육료 지급 요건 추가 : 보육교직원 급여내역 입력

- 민간·가정 어린이집에서 기관보육료(21~57만 원)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원장, 담임교사 등 보육 교직원 급여 내역 입력(22.3~)

□ 보육교사 처우개선

- 보조교사 및 연장보육교사 지원기준(정원충족률, 이용아동수 등) 완화

* (보조교사) 전체 정원충족률 50% 이상 → 영아반 정원충족률 50% 이상

* (연장보육교사) 도서·벽지·농어촌의 경우, 이용 아동 또는 이용 시간 기준 중 1개 충족 시 지속 지원 가능

- 교사 대 아동 비율 특례인정 시, 증가하는 수입금의 최소 30% 이상을 보육교사 급여 등 처우개선에 사용해야 하고, 위반 시 특례 적용 제외

- 운영비 예산 범위 안에서 대체교사 관리자 외 대체교사에게도 수당 추가 지급 및 취약지역 및 원거리 근무지의 경우 유류대 지급

- 시간제 형태로 근무하는 교사의 승급 교육은 실근무경력 기준으로, 직무교육은 실근무경력과 무관하게 만 2년이 지나면 이수 필요

-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교사와 연장 보육 교사를 지원할 어린이집 선정 시 우선순위로 참고하도록 세부기준 마련

보조교사	연장보육교사
·장애아 전문/통합 어린이집 우선 지원(장애 영아 현원 수 고려) ·열린어린이집으로 지정된 어린이집 우선 지원 ·민간·가정 어린이집 중 국공립 1호봉 이상 지급 어린이집, (0세반 운영 여부 및 0세반 수 고려) 다(多)가치 보육 시범사업 참여 어린이집, 평가제 평가 결과, 표창 내역, 행정처분 이력, 영아반 수 고려 등	·민간·가정어린이집 중 국공립 1호봉 이상 지급 어린이집, 연장반 아동의 마지막 하원 시간 및 연장반 수 고려 등

□ 장애아보육 질 향상

- 장애아전문·통합어린이집 근무 특수교사 처우개선을 위해 2022년부터 특수교사(유치원과정) 수당을 10만 원 인상(30→40만 원)하고, 장애아전문어린이집 근무 치료사 수당도 10만 원 인상(30→40만 원) 지급
- 장애영유아 어린이집에 취학 지원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취학 지원계획 수립 및 이행실적 모니터링
 - *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라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은 장애영유아에 대한 체계적인 보육지원과 원활한 취학을 위한 보육계획을 수립·실시하여야 함

□ 신규 개원 어린이집 조리원(조리사) 인건비 지원 기준 완화

- 신규 개원 국공립 어린이집의 경우 평가 결과 공표가 지연됨에 따라 평가 결과 공표 당해 연도에 한하여 최대 6개월까지 소급 지급
 - * 인건비 지원 시설은 평가제 결과 B등급 이상 어린이집에 조리원(조리사) 1명분의 인건비 지원 중이나 평가기간이 예년보다 6~8개월 더 소요되어 지원 시작이 늦어지는 상황

□ 가정양육수당 지급 규정 구체화 및 절차 개선

- 영아수당(만0~1세, '22년생부터) 지원으로 양육수당 대상자 정비
 - 0~86개월 미만 아동 → '22년생부터 0~1세를 제외한 아동
 - * 가정양육으로 영아수당을 지원받는 아동은 24개월부터 자동으로 양육수당으로 자격전환
- 부득이한 사유로 양육수당을 신청하지 못한 자에게 지원 기회 부여

- 감염병으로 인한 입원이나 격리조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육수당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소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
- * 지방보육정책위원회(아동복지심의위원회로 갈음 가능)의 심의를 거쳐 부득이한 사유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그 사유가 인정되는 기간을 결정하여 해당기간의 양육수당을 지급

□ 외국인 아동 대상 시간제 보육 서비스 확대

- 외국인 아동도 시간제 보육 서비스 등록·신청*이 가능하도록 개선('22.4월~)
- * 외국인아동(6~36개월) 등록은 시간제보육 관리기관에서 아동등록 후 이용료 전액 자부담(4,000원)으로 이용 가능('22.4월 예정)